

1. 개정 이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증가함에 따라 작성되는 의향서의 양도 방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일부 서식을 큰글자 서식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개편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보관 방법 규정(안 제8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보관하도록 규정

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 규정(안 제25조)

- 환자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규정

다.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6호, 제12호 및 제21호서식)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말기환자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주요 작성자가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서식을 작성할 때 읽고 쓰기 쉽게 하기 위하여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안 별지 제1호 및 제6호서식)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21.12.21.)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이 추가되어, 등록기관 지정 신청서식에 이를 반영(안 별지 제2호서식)
- 기타 서식 기재란 및 문구를 간결하게 수정(안 별지 제12호 및 제2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자가족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의 장에게 열람 요청이 가능한 기록

가. 법 제20조제1호 및 제6호의 기록

나. 등록기관에서 작성되어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 요청이 가능한 기록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작성·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으로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 유형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 유형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
 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명의료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자 상태 []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호스피스 이용	[] 이용 의향이 있음	[] 이용 의향이 없음
담당의사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 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녹화 ☐ 녹취 ※ 법정대리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열람 가능 ☐ 열람 거부 ☐ 그 밖의 의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뒤쪽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연명의료계획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모두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으로서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연번	친권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 환자가족 전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 환자의 환자가족으로서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표시합니다.				
	연번	환자가족 성명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필요시 칸 추가			(서명 또는 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해당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환자가족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을 받은 사람은 환자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전원합의 대상인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①배우자, ②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③2촌 이내의 존속·비속(①~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④ 형제자매(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록 열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자와의 관계	1. [] 배우자 2. [] 직계비속 3. [] 직계존속 4. [] 형제자매 (1,2,3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	
대상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열람 신청 기록	[] 법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한 결과		
	[]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 결과		
	[]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 결과		
	[]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 결과		
	[]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의 결과		
	[] 영 제10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 기관의 장이 사전연명의료의향 서를 등록·보관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 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생 략) 제25조(기록 열람 등) <u><신 설></u>	제25조(기록 열람 등) ① <u>법 제33 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자가족 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 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관리기관의 장에게 열람 요 청이 가능한 기록</u> 가. <u>법 제20조제1호 및 제6호 의 기록</u> 나. <u>등록기관에서 작성되어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 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사 전연명의료의향서</u> 2. <u>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 요 청이 가능한 기록 :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 해 의료기관에서 작성·보존</u>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열람 거부의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하여야 하는 기록으로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u>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 ----- ----- ----- ----- ----- -----.
--	---